

혼합유박 비료

M 9018 : 2012

Mixed oil meal Fertilizer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국내에서 발생한 깻묵, 잠용유박, 대두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낙화생유박, 피마자박, 미강유박, 기타 식물성유박 중 2종 이상을 질량기준으로 원료의 40% 이상 사용한 혼합유박 비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 고 혼합유박 비료는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유박으로 발효시키지 않고 본래의 형태 및 성질을 그대로 성형한 것으로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한 유기질 비료 중 혼합유박 비료에 해당한다.

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표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표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5101 시험용체

KS M 0001 화학분석 및 시험방법에 대한 통칙

법률 제10836호 비료관리법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2-1호 비료공정규격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46호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46호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

농촌진흥청 고시 제 2011-28호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3. 용어의 정의

3.1 비료 :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로서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과 그 밖에 농립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3.2 혼합유박비료 : 비료관리법 제2조 2의 보통비료 11종 중 유기질비료 17종에 규정된 비료를 말한다.

3.3 보증 성분량 :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제3조 보통비료의 종류에 따른 공정규격에서 정한 성분량을 말한다.

3.4 유박( ) : 식물성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4. 재료 및 제조방법

제조과정에서 자원소비와 관련해서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4.1 제품구성 원료 중에서 원료별 사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4.2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공정규격에서 규정한 원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4.3 제품에는 식물 생장에 장애가 되는 이물질은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4 제품의 성형을 위하여 비료공정규격에서 허용된 물질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4.5 제품의 외형은 정하여진 규격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품질

혼합유박비료의 품질은 7. 에 따라 시험하고 다음 표 1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품질기준

항 목	품 질	항 목	품 질
질소전량	2종 이상의 총량이 7 % 이상	비 소	20 mg/kg
인산전량		카드뮴	2 mg/kg
칼리전량		수은	1 mg/kg
유기물	70 % 이상	납	50 mg/kg
염분(NaCl)	0.5 % 이하	크롬	90 mg/kg
수분	20 % 이하	구리	120 mg/kg
치수	직경(3.5 ~ 6 mm) 길이(0.5 ~ 2 cm)	니켈	20 mg/kg
		아연	400 mg/kg

- 비 고**
1. 질소, 인산, 칼리 각각의 보증 성분량을 등록하여야 하며, 2종이상의 총량이 7 % 이상이어야 한다.
  2. 부속된 제품은 제외한다.
  3. 규정된 치수 이외의 경우에는 당사간의 협의에 따른다.

**6. 시료 채취 방법**

시료 채취 방법은 7.2항의 공시품의 조제법에 따른다.

**7. 시험 방법**

**7.1 일반사항**

시험에 공통되는 일반 사항은 KS M 0001에 따른다.

**7.2 공시품의 조제법**

공시품은 다음의 각 항에 의거 조제하고 마개 있는 유리병이나 공기의 유통이 없는 용기에 저장한다. 공시품의 조제는 될수록 신속히 하여 수분의 증감이 없도록 한다. 분쇄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채취한 공시품은 전량이 체를 통과하도록 조작을 반복한다.

가. 공시품이 건조되어 있을 때는 분쇄하고, 500 $\mu$ m의 체를 통과시켜 잘 혼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요령대로 공시품을 조제한다.

1) 분쇄할 때 접성이 있어서 체로 치기 곤란한 것은 분쇄하여 잘 혼합한다.

2) 털, 깃털, 형겅조각, 목화씨 껍질 등은 가위 또는 절단기로 잘게 잘라서 혼합한다.

나. 공시품이 물기가 있을 때는 전량 또는 혼합하여 약 500g을 채취하여 이것을 달고 햇빛 또는 낮은 온도로 충분히 건조한 후 칭량실 안에서 하루 동안 놓아두고 풍건하여 다시 달고 가.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시품을 조제하며 그 분석 성적은 원품의 함량으로 계산한다.

다. 거친 협잡물이 섞여 있을 때는 우선 이것을 제거하고 원품에 대한 그 비율을 검정하여 분석 성적은 원품의 함량으로 환산시킨다.

**7.3 각 항목별 시험방법**

혼합유박비료에 대한 각 항목별 시험방법은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1-46호의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에 따른다.

**8. 검사**

혼합유박 비료에 대하여 7. 에 따라 시험하고 5.의 품질규정에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9. 표시**

혼합유박비료는 용기나 포장마다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1) 명칭 혼합유박비료
- (2) 제조 시 무게
- (3) 보증 성분량
- (4) 원료명 및 배합비율
- (5) 표준사용량
- (6) 제조년월 또는 그 약호
- (7)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

제 정 자 : 기술표준원장

제 정 : 2012년 04월 03일

관련 근거 : 기술표준원 고시

담당 부서 :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국 신기술지원과

이 표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Tel. 02-509-7286)로 연락하여 주십시오.